

202.37호

행 정 명 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이제 행정부 법(Executive Law)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의거,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5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지침을 발행합니다.

반대로 사전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에도 불구하고, 연방, 주 또는 지방 법률,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특수 교육 서비스 및 지침이 교육구의 여름 학기 동안 직접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모든 지구는 주 및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

2020년 6월 5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